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3537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353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소256070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오승환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변론 종결 2019. 11. 26

판결선 고 2020. 1. 21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소25607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1. 2.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원고 피공제차량('원고차량'이라 한다)D피고 피보험차량('피고차량'이라 한다)E일시장소이 사건 사고 경위2018. 8. 14. 14:40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상일IC에서 강일IC 방향원고 차량은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우측의 합류도로에서 4차로로 합류하면서 원고 차량 조수석 앞부분과 피고 차량좌측 부분이 충돌하였다('피해차량'이라 한다).

나. 원고의 보험금지급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40:60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8. 12. 4.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40%에해당하는 3,9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7, 을 제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우합류도로에서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원고 차량을 앞지르며 무리하게 끼어든 점, 원고 차량 충격 부위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사각지대인 점, 차량 정체로 원고 차량은 서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합류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끼어든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당시 차량 정체로 양차선 모두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펴 감속이나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원고 차량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쌍방의 과실내용과 이 사건 사고 경위, 충격 부위, 교통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40:6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한판사 김형훈판사 박광우